

ESG 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카카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카카오 ESG 의 세부 영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.

- 환경: 기후변화 대응, 그린디지털 구축, 온실가스 등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, 생물 다양성 보존
- 사회: 사회문제 해결, 파트너 상생, 인권 존중, 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, 이용자 보호
- 지배구조: 지배구조 선진화, 리스크 관리, 윤리경영 강화
- 기타: 위원장이 부의하는 주요 영역

제 3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(권한)

-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
2.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3. 위원회는 ESG 리스크를 포함한 전사적 비재무 리스크의 요인 검토, 감독 및 정책수립 등 『리스크관리규정』에 따른 비재무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
4. 비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하여 이사회를 보좌한다.

제 2장 구성

제 5 조 (구성)

1.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2.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3.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4.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위원장)

1.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3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장 회의

제 7 조 (소집권자)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6 조 제 3 항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 일 전에 각 위원에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10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사 ESG 전략 방향 및 중장기 목표
2.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
3.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책
4. 『리스크관리규정』 상 비재무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
5.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6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
7. 기타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11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13 조 (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간사)

1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5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